

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1. 11. 29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,418,142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중
- 붙임 조서 내용과 같이 예비비 540,085천원을 지출하였기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 요구함.

예비비 지출

(단위 : 원)

구 분			지 출 결정액 ㉔	지출원인 행 위 액 ㉕	지 출 액 ㉖	이월액 ㉗-㉙-㉚-㉛-㉜-㉝	불용액 ㉞-㉟-㊱-㊲-㊳-㊴	처 리 일 자		예 비 비 지 출 사 유
과	목	세						지출결정 일 자	지 출 일 자	
합 계 (5 건)			540,973,000	540,085,020	540,085,020	0	887,980			
사회복지	자책사업	일 반 운영비								
			4,382,000	3,495,720	3,495,720	0	886,280	'00. 1. 6.	'00. 1. 14. ~ 1. 26.	2000. 1. 4~1. 5. 월릉면 영태리 캠프에 드 워드 공병대 유류저장고 폭발물설치 첩보로 인해 피해예상지역(영태1~5리)의 주민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킴에 따라, 수용된 주민의 구호물품구입을 위한 소요예산 집행
인사행정	인건비		405,213,000	405,213,000	405,213,000	0	0	'00. 6. 10.	'00. 5. 30.	2000년도 제1차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퇴직신청자가 많아 수당 및 포상금등 부족되는 추가소요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
	자책사업	포상금	1,014,000	1,014,000	1,014,000	0	0			
인사행정	인건비		103,479,000	103,478,100	103,478,100	0	900	'00. 8. 2	'00. 8. 8	2000년도 제1차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나 7월에 추가 명예 퇴직 신청자가 발생됨에 따라 제2차 명예 퇴직 수당이 부족하여 추가 집행
도시개발 관 리	자책사업	시설비 및 부대비	26,885,000	26,884,200	26,884,200	0	800	'00. 9. 23.	'00. 9. 27.	금촌도시계획도로(소로2-4호)의 편입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160,000천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으나, 편입토지(아동동 346-14번지/ 답259㎡ 최기영)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 확정 결과 보상금 26,88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 지원

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건수	지출결정액 ①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 ③	이월액④ (①-③-⑤)	불용액⑤ (①-③-④)
계	5	540,973,000	540,085,020	540,085,020	-	887,980
일반회계	5	540,973,000	540,085,020	540,085,020	-	887,980

□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지출 승인안을 불임과 같이 심의 의결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- 2000년도 예비비는 2,418,142천원을 확보하여 미군부대 폭발물 설치 첩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 물품구입비용 등 불임조서와 같이 예비비 540,085천원을 지출하였음.

□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.

- 금촌도시계획도로(소로2-4호)의 편입토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160,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,
- 편입토지(아동동346-14번지/답 259㎡, 최기영)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재결 확정결과 보상금 26,885천원이 증액되었는바, 금촌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동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동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.